

## 景品類 提供에 關한 不公正去來行爲 指定告示

### 景品類 提供에 關한 不公正去來 行爲 指定告示

第1條(目的) 이 告示는 獨占規制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事 第15條 第3號 및 同法 施行命 第21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 不堂한 景品類의 提供에 의한 顧客의 誘引하여 防止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景品類의 定義) ① 이 告示에서 景品類라 함은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이나 用役의 去來에 附·하거나 去來에 附·하지 아니하더라도 廣告의 方法에 의하여 그 去來相對方 또는 一般消費者에게 提供하는 經濟上의 利益으로서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社會通念上 正常的인 商慣行으로 認定되는 アフター서비스 또는 當該 商品이나 用役의 本來의 內容이나 이의 使用에 附隨한다고 認定되는 經濟上의 利益은 除外한다.

1. 物品, 金錢, 割引券, 商品券, 其他 有價證券
2. 演藝, 映畫 및 運動競技第에의 招待券
3. 便益等의 用役
4. 其他 顧客을 誘引하는 手段으로 認定되는 經濟上의 利益

② 第1項에서 自己가 供給하는 商品이나 用役의 去來라 함은 自己가 生産 또는 販賣하는 商品이나 用役이 最終需要者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流通段階에서의 去來를 말하며 이에는 販賣·貸貸·交換·預金의 受取 및 信

用의 供與, 信用卡 利用者의 募集 등을 包含한다.

③ 第1項의 經濟上의 利益에는 事業者가 特別한 費用을 들이지 아니하고 提供할 수 있는 物品이나, 市販되고 있지 아니하는 物品등이라도 그 去來相對方이 通常 代價를 支給하지 아니하고는 取得할 수 없는 것이라고 認定되는 경우를 包含한다. 다만, 다음 名號의 1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것은 該當하지 않는다.

1. 去來相對方의 勞若에 對한 報酬
2. 社會通念上 正常的인 商慣行으로 認定되는 代價의 減額 또는 受取한 代金의 一部 返還

④ 第1項 但書에서 社會通念上 正常的인 商慣行으로 認定되는 アフター서비스 또는 當該 商品이나, 用役의 內容이나 이의 使用에 附·한다고 認定되는 經濟上의 利益이라 함은 다음 名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를 말한다.

1. 商品의 販賣 또는 使用이나 用役의 提供에 附·的으로 必要한 物品 또는 用役을 提供하는 경우
2. 2以上の 商品에 함께 販賣하는 것이 商慣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無料로 提供받았다고 認定하지 아니하는 경우
3. 2以上の 商品에 各各 販賣價格이 表示되어 있고 去來相對方이 希望하면 그중 하나만을 購入할 수 있는 경우
4. 其他 當該商品 또는 用役의 性質이나 內容 등에 비추어 社會通念上 正常的인 商慣

行으로 認定되는 경우

**第3條(懸賞의 定義)** ① 이 告示에서 懸賞이라 함은 抽籤 其他 偶然性을 利用하는 方法에 의하거나 또는 特定行爲의 優劣이나 正誤에 의하는 方法에 따라 景品類의 提供相對方이나 提供하는 景品類의 價額을 定하는 것을 말한다.

② 第1項에서 抽籤 其他 偶然性을 利用하는 方法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를 말한다.

1. 抽籤卷을 使用하는 方法
2. 領收證, 商品을 容器·包裝 등을 利用하여 抽籤을 行하는 方法
3. 商品의 一部에만 景品類를 넣은 후 購入者가 어느 商品에 景品類가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方法
4. 모든 商品에 景品類를 넣되 景品類의 價額에 差等이 있고 購入者가 그 景品類의 價額을 알 수 없게 하는 方法

③ 第1項에서 特定行爲의 優劣이나 正誤에 의하는 方法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를 말한다.

1. 應募時에 一般的으로 明白하지 아니한 事項에 對한 豫想을 募集하여 그 解答의 優劣 또는 正誤에 의하는 方法
2. 商品에 관한 情報·知識 其他 趣味·娛樂·教養 등에 關한 問題의 解答을 募集하여 그 解答의 優劣 또는 正誤에 의하는 方法
3. 競技·演技·遊技 등의 優劣에 의하는 方法

**第4條(景品類의 提供禁止對象行爲)** 事業者가 景品類를 提供함에 있어서 美風良俗이나 未成年者의 健全한 成長을 沮害할 憂慮가 있거나 其他 欺瞞的인 懸賞方法에 의하여 景品類를 提供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消費者 景品類의 提供制限)** 事業者가 一般消費者를 對象으로 商品이나 用役의 去來에 附·하여 景品類(以下“消費者 景品類”라 한다)를 提供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에 該當하는 金額의 範圍를 超過할 수 없다. 다만, 來店者에게 提供하는 景品類의 價額限度

는 500원을 超過할 수 없다.

景品附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價額	景品類價額限度
5,000원 未滿	500元以下
5,000원以上 50萬원未滿	去來價額의 10%以下로 하되 最高 25,000원 以下
50萬원以上	去來價額의 5%以下로 하되 最高 50,000원 以下

**第6條(消費者 景品類提供의 適用除外)**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景品類의 提供制限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고 社會通念上 正常的인 商慣行에 비추어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景品類 提供에 對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見本 또는 宣傳用으로 提供하는 物品 또는 用役으로서 價額이 적은 경우.
2. 自己의 商品이나 用役의 去來에 使用되는 1回限의 割引卷 또는 割引을 約束하는 證票
3. 創業 또는 開業紀念時에 提供하는 物品 또는 用役으로서 價額이 적은 경우

**第7條(消費者懸賞景品類의 提供制限)** ① 事業者가 一般消費者를 對象으로 去來에 附·하여 懸賞에 의한 景品類(以下“消費者 懸賞 景品類”라 한다)를 提供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該當하는 金額의 範圍를 超過할 수 없다.

景品附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價額	景品類 價額限度	景品類提供 總額限度
1,000원 未滿	10,000원 以下	景品附商品 또는 用役豫想賣出額의 1% 以下
1,000원以上 10萬원未滿	30,000 "	
10萬원 以上	50,000 "	

다만, 競技後援業 및 放送業의 경우에는 用役의 去來價額에 關係없이 景品類의 價額限度는 30萬원 以內로 하고 景品類 提供 總額限度는 景品附用役의 豫想賣出額의 5% 以內로 한다.

② 第1項의 豫想賣出額은 다음 各號와 같이 算定한다. 다만, 前年度 賣出額算定이 困難한 경우에는 景品額提供 豫定期間의 推定 賣出額을 基準으로 한다.

1. 競技後援業 및 放送業을 除外한 其他事業

豫想賣出額=

$$\text{前年度 統賣出額} \times \frac{\text{景品提供豫定日數}}{365}$$

2. 競技後援業 및 放送業

豫想賣出額=

$$\text{前年度 統賣出額} \times \frac{\text{景品提供豫定日數}}{\text{年間用役提供日數}}$$

③ 第1項에서 去來에 附·한 懸賞이라 함은 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를 條件으로 懸賞에 의하여 景品額을 提供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에는 다음 各號의 方法에 應募卷을 넣는 方法

1. 商品의 容器·包裝 등에 應募卷을 넣는 方法

2. 商品의 容器·包裝에 出題하는 方法

3. 商品을 購入함으로써 解答이 容易해지는 問題를 廣告等에 依하여 出題하는 方法

4. 商品의 購入者나 去來相對方等を 對象으로 하여 競技·演技등 特定行爲에 依하는 方法

5. 其他 去來를 條件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去來에 附·한 懸賞이라고 認定되는 行爲에 依하는 方法

**第8條(特定한 消費者 懸賞景品類의 提供禁止)**

2以上の 商品을 購入하여야만 文字·繪畫·符號 및 카드등의 組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方法이나 2回以上 商品을 購入하여야만 應募할 수 있도록 하는 方法에 의한 消費者 懸賞景品類의 提供은 第7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를 行하여서는 아니된다.

**第9條(公開懸賞景品類의 提供制限) ① 事業者나 一般消費者를 對象으로 廣告의 方法에 의하여 去來에 附·하지 아니하고 懸賞에 의한 景品類(以下 “公開懸賞景品類”라 한다)를 提供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景品類提供總**

額限度는 300萬원을 超過할 수 없다. 다만, 新聞發行業·定期刊行物 出版業·競技後援業 및 放送業의 경우에는 景品類 提供 總額限度는 30萬원을 超過할 수 없다.

② 第1項에 있어서 廣告의 方法이라 함은 商品이나 容器·팜프렛·新聞·放送·映畫 등에 의한 商品廣告나 企業廣告 등을 말한다.

**第10條(懸賞景品類의 適用除外)** 高度의 知識·技能·技術 등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一般消費者가 容易하게 應募하거나 參與할 수 없는 것을 對象으로 하고 그 內容의 優劣에 따라 特定人을 選定하여 支給하는 對價 또는 報償이라고 認定되는 것은 이를 第7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 懸賞景品類 및 公開懸賞景品類의 提供으로 보지 아니한다.

**第11條(事業者景品類의 提供制限) ① 事業者는 去來相對方인 事業者에게 景品類를 提供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去來相對方인 事業者에게 1人當 年間 30萬원 以內의 景品類를 提供하는 경우로서 正常的인 商慣行에 비추어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事業者가 懸賞에 의한 方法에 의하여 去來相對方인 事業者에게 景品類를 提供하는 경우에도 第1項 但書의 金額範圍를 超過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2條(事業者景品類提供의 適用除外)**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景品類의 提供制限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고 社會通念上 正常的인 商慣行에 비추어 去來相對方인 事業者의 業務助成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景品類提供에 對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當該商品의 販賣 또는 保管을 위해 直接的으로 必要한 機器 또는 施設의 提供

2. 廣告·宣傳을 爲한 裝置·施設 등의 提供이거나 廣告·宣傳의 支援

3. 見本의 提供

4. 親睦을 爲한 會合時나 創業 또는 開業 記念時에 提供하는 景品類

**第13條(景品類의 提供回數 및 期間) ① 事業者**

자가 消費者景品類를 提供할 수 있는 回數 및 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製造業을 營爲하는 事業者는 年4回以內로 하되 1回當 15日을 超過할 수 없다.

2. 綜合小賣業을 營爲하는 事業者는 年4回以內로 하되 1回當 7日을 超過할 수 없다.

3. 其他事業을 營爲하는 事業者는 回數와 關係없이 年間 15日을 超過할 수 없다.

② 事業者가 消費者懸賞景品類 및 公開懸賞景品類를 提供할 수 있는 回數는 이를 合計하여 年3回以內로 하되 1回當 30日을 超過할 수 없다.

③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競技後援業·放送業·新聞發行業 및 定期刊行物出版業을 營爲하는 事業者가 消費者懸賞景品類 및 公開懸賞景品類를 提供할 수 있는 回數는 이를 合計하여 다음 各號의 回數를 超過할 수 없다.

1. 競技後援業을 營爲하는 事業者는 年30回

2. 放送業을 營爲하는 事業者는 年100回

3. 新聞發行業 및 定期刊行物出版業을 營爲하는 事業者는 年50回

**第14條(去來價額등의 算定)** ① 景品附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價額 算定은 다음 各號의 方法에 의한다.

1. 一般消費者가 通常의으로 購入하는 價格을 基準으로 하되 그 價格의 算定이 困難한 경우에는 去來의 標準으로 使用되는 價格을 基準으로 한다.

2. 2以上の 商品이 組合되어 去來單位가 되거나 同一事業者의 店舖에서 同一人이 2以上の 商品을 購入할 때에 景品類를 提供하는 경우에는 2以上 商品의 價格의 合計를 基準으로 한다.

② 景品類價額의 算定은 다음 各號의 方法에 의한다.

1. 一般消費者가 景品類와 同一한 것을 市中에서 購入할 수 있는 경우에는 通常의으로

購入하는 價格을 基準으로 하되 그 價格의 算定이 困難한 경우에는 去來의 標準으로 使用되는 價格을 基準으로 한다.

2. 景品類가 市販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景品類提供事業者가 實際로 購入한 價格(直接 製造한 경우에는 製造原價)에 同價格의 25%를 加算한 金額을 基準으로 한다.

3. 2以上の 景品類를 提供하는 경우에는 各各의 景品類價格의 合計額을 基準으로 한다.

**第15條(他法과의 關係)** 事業者가 懸賞에 의하여 景品類를 提供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懸賞內容이 射倖心を 誘發할 憂慮가 있는 施設 또는 方法에 의하여 營利를 圖謀코자 하는 行爲인 때에는 「福票發行懸賞 其他 射倖行爲團束法」의 適用을 받는다.

##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告示는 1985年 7月 1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告示)** 이 告示施行과 同時에 景品類提供에 관한 不公正去來行爲 指定告示(經濟企劃院告示 第56號)는 廢止한다.

**第3條(經過措置)** ① 이 告示施行 以後 1985. 12. 31日까지의 景品類提供回數 및 期間의 算定方法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競技後援業·放送業·新聞發行業 및 定期刊行物出版業에 대하여는 第13條에서 規定한 回數는 半으로 한다.

다만, 第13條 第1項 3號의 景品類提供期間은 回數와 關係없이 8日로 한다.

2. 其他事業의 景品類提供回數는 이 告示施行 以前에 行한 回數와 이 告示施行 以後에 行한 回數를 合算하여 第13條를 適用한다.

② 이 告示施行 前에 이루어진 行爲에 대하여는 景品類提供에 관한 不公正去來行爲 指定告示(經濟企劃院告示 第56號)의 規定에 의한다.